

명,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증원 119명, 소방과출소 신설 등으로 인한 소방인력 증원 153명),

2차는 민간위탁 및 법인화 등을 시행할 때('99년 7월 이후) 대상 10개 기관에서 64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1차 정원조정안에 의하면, 정원총수는 16,679명에서 264명을 감축한 16,4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11,531명에서 394명을 감축한 11,137명으로, 소방직공무원은 4,593명에서 4,74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223명에서 200명으로, 교육공무원은 현행대로 332명으로 구분하여 경하여야 하나 정원총수를 조정하지 않고 집행기관 정원을 소방직 공무원 증원인력 15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 감축인원 23명을 제외한 130명만을 감축한 11,401명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98.4.30 제정)가 '99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인 도로, 하수 시설물관리를 서울시에서 환수함에 따른 소요인력 214명을 증원해야 하고,

또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이 3월 중 시달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원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4월중 추진되어야 하므로 금번 구조조정에 의한 1차 순감축인원 264명은 정원규칙으로만 감축운영하고 조례로는 현행 정원 총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방직공무원 증원인력만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감축인원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 총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 다만, 서울시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 결과가 조례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소방인력은 현행 조례상 총 정원 16,679명의 27.5%인 4,593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금번 소방과출소 신설 등에 따른 소요인력

153명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감축정원에서 충원해야 하는 결과는 정원관리 운용상 불합리하고,

또한, 앞으로도 소방인력은 계속 기구신설 등에 따라 증원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과 같이 소방공무원도 표준정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표준정원 : 인구수, 자치구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에 일정변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현재 서울시 표준정원 16,679명)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 및 管理運營委託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 중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사업관, 시립동부 및 남부청소년회관과 본 조례 제정('98. 4. 30)시 누락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시립신림 및 구로청소년상담센터와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을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위탁사무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금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과)과 일부 기존 공공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계속 확대될 추세로 전망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사무구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가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대상 사무와 위탁에 따른 기본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 또한,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과) 변경은 서울특별시행정 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직제규칙 개정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의 공포시행일은 상기 개정조례 및 규칙의 공포 시행일과 같거나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장·국장·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4조(실·국·본부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의 정책 및 기획을 종합·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조직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보건복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환경관리실·소방방재본부·도시계획국·교통관리실·건설국 및 주택국을 둔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심사·경영평가 및 시민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

4. 재정기획·예산기준·부채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

6. 자치법규안의 심사·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청사관리·문서관리 및 문서보존
2. 인사·후생복지·인력개발·직무분석 및 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업무의 총괄 및 구·동 행정의 지원
4. 창구 민원에 관한 사항
5. 시민단체의 지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8. 시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국유재산의 관리·운용

제7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 노숙자·부랑인보호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항
5. 의무·약무·방역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정책의 총괄·조정
2. 중소기업의 지원·육성
3. 첨단산업·지식산업·벤처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
4. 상공업 및 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고용안정·인력개발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문화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 정기간행물 등록
2. 문화재의 보존·관리